

## □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 취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가능한 시장원리에 맡기고, 사료산업의 민간 자율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

### 2. 주요 풀자

- 가. 용어의 정의중 보조사료의 범위에 “가축의 영양결핍 보충 또는 성장촉진”을 위한 것도 포함시킴으로써 동물용의약품중 사료첨가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춤.
- 나. 일정사료를 수출·수입, 비축·공급토록 하는 사료조절단체의 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율적인 사료 수급안정을 기함.
- 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보조사료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관련단체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중 사료첨가제로 수입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입관리를 가능토록 함.
- 라.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 부산물 등에 대한 판매방법 지정제도를 폐지함.
- 마. 농림부장관의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 도모.
- 바. 사료품질검사에 필요한 사료업체의 시설과 인원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각 업계의 여건에 맞도록 자율성을 보장.
- 사. 등록이 취소된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2년 이내 재등록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제재를 배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제조업”이라 함은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며, “수입업”이라 함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직접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와 혼합·배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에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품질 저하 방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제조(혼합·배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매(단순히 제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료의 수급조절등)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진흥 또는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사료조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료를 지정하여 이를 수출·수입하게 하거나 비축·공급하게 할 수 있다.</p> <p>②농림부장관은 사료조절단체가 사료를 수출·수입하거나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p> <p>③농림부장관은 사료조절단체가 제2항의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사료를 수입 또는 공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지원)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진흥 또는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료관련단체로 하여금 사료의 수출·수입 또는 비축·공급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6조(사료의 가격안정조치)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료에 대하여 판매방법을 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사료</li> <li>2. 배합사료</li> <li>3.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의 부산물인 사료</li> <li>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료</li> </ul> <p>제7조(사료의 용도의 판매금지) 누구든지 제6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사료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이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8조(매점·매석의 금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사료를 매점하거나 사료의 제조 또는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9조(제조업의 등록등) ①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단미사료의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과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삭제]</p>	<p>제5조의3(보조사료등의 수입신고등)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관련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수입신고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7조(사료의 용도의 판매금지) . . . . .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 원료용 또는 실수요 양축가용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 . . . .</p> <p>[삭제]</p> <p>제9조(제조업의 등록등) ①[삭제]</p> <p>②단미사료·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 . . . . .</p> <p>③제2항의 . . . . .</p>

현 행	개 정 (안)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 . . . . · · · · · 도지사 . . .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 . . . . · · · · · 도지사 . . . . .
제15조(사료의 검사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을 갖추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의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검사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을 공동으로 갖출 수 있다.	제15조(사료의 검사등) ① . . . . . · · · · · 품질관리를 위하여 . . . . . · · · ·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폐기등 조치)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5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등 조치) . . . . . · · · · · 1. . . . . 성분이 · · · · ·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상이한 때 2. (현행과 같음)
제17조(제조업의 등록 취소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조업의 등록 취소등) ① 도지사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1. - 6. (생 략)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료의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8조(영업의 정지명령 및 과정금처분) ①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 . . . .	제18조(영업의 정지명령 및 과정금처분) ① 도지사는 . . . . . · · · ·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이외로 판매한 때 2. - 7. (현행과 같음) 8. 제20조 . . . .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방법을 위반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 7. (생 략)	
8.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생 략)	
② (생 략)	
제19조(허위광고등의 금지)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보고 · 검사등)①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 · · · · 사료조절단체 또는 · · · · · ②농림부장관 또는 · · · · · · · · · · 사료조절단체 또는 · · · · · · · · · · 업무상 · · · · ·	제21조(보고 · 검사등)① · · · · · 또는 · · · · · ② · · · · · 또는 · · · · · · · · · ·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무상 · · · · ·
제22조(고시)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조절 단체를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판매방법을 정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	제22조(고시) 농림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등)① (생 략)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삭 제) 3. (생 략)	제23조(수수료등)① (현행과 같음) 1. 제9조제2항 · · · · ·  3. (현행과 같음)
제25조(권한의 위임 · 위탁) · · · · · · · · · · 사료조절단체에 위탁하여 · · · ·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 · · · · · ·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관련단체
제26조의2(청문) · · · · · 1. (생 략)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등록취소	제26조의2(청문)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의 · · · · ·
제28조(적용배제)① (생 략) ②사료조절단체가 수출 · 수입하거나 비축 ·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유지법과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적용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31조(별 칙) · · · · ·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판매한 자 2. (생 략) 3. 삭제 4.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 · · · · · · · · · 제19조 또는 · · · · · 5. (생 략)	제31조(별 칙) · · · · ·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2항 · · · · · · · · · · 또는 · · · · · 5. (현행과 같음)